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해양과학조사 절차(안 제11조의3)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행권고(안 제18조)

이행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그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오류를 정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법 제20조의2제1

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공해 등 조사계획서’는 별표 5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양과학조사 동의 여부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제11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사항(조사선명, 조사기간, 조사책임자, 후원기관 등)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목적, 조사항목, 사업기간 등)
3.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경위도 좌표, 도면 등)
4. 조사방법 및 수단에 관한 사항(선박, 선장 및 승무원, 승선과학자 및 동승자, 조사장비 등)
5. 설비 및 장비에 관한 사항(조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등)
6. 일정에 관한 사항
7. 항해에 관한 사항(기항지의 항구 이름, 기항일자 등)
8. 연안국의 참가에 관한 사항(연구 프로젝트, 참가자의 승하선 일시 등)
9. 조사결과(데이터, 샘플 등)에 대한 이용에 관한 사항
10. 제출된 기타 허가사항
11. 문서 목록(연안국의 추가 요구사항)
12. 계획서 제출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 비고 : 조사하려는 해역의 해당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관련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해 등 조사계획서(제11조의3제3항 관련)

공해 등 조사계획서(제11조의3 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 (6) 이메일

나. 조사기관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

다. 조사책임자 및 조사요원

(1) 성명 (2) 소속 (3) 직위·직책 (4) 주소 (5) 전화번호

라. 후원기관(사업발주처)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후원내용

마. 제3국 참여에 관한 사항(필요시)

(1) 국명 (2) 성명 (3) 참여목적 (4) 참여내용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칭 나. 목적 다. 조사항목 라. 조사기간 마. 조사결과 관리 및 활용계획

3. 조사방법 및 수단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1) 명칭 (2) 국적 (3) 소유자 (4) 운영자 (5) 총톤수 (6) 순톤수 (7) 추진방식
(8) 순항속도 (9) 최대속도 (10) 전장 (11) 최대 흘수 (12) 호출부호 (13) 국제무선 주파수 (14) 전화번호

나. 선장 및 승무원

(1) 성명 (2) 생년월일 (3) 소속·직위 및 직책 (4) 전화번호

다. 선박장착 조사장비

(1) 명칭 (2) 장착위치 (3) 용도

라. 선박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책임한도(필요시)

마. 항공기·잠수정 및 소형선박(필요시)

(1) 명칭 (2) 탑승인원 (3) 순항속도 (4) 최대속도 (5) 항속거리 (6) 잠항수심
 바. 조사항목 및 사용장비

(공해 등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는 반드시 기재)

조사항목	사용장비(기기·설비포함)	사용방법	사용 및 설치 위치

사. 폭발물 사용(필요시)

(1) 종류 및 상품명 (2) 화학성분 (3) 부피 및 중량 (4) 폭발력

아. 유해물질 사용(필요시)

(1) 종류 (2) 화학성분 (3) 부피 및 중량 (4) 사용목적 및 장소

자. 해저굴착(필요시)

(1) 사용장비 (2) 굴착목적 및 위치 (3) 기간

4.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가. 조사해역의 지리적 좌표 및 도면

나. 정선·정점의 지리적 좌표, 항적도 및 조사일정

다. 항해안전을 위한 조치

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조사방법 및 수단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11조의2 (생략) <u><신 설></u>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의 해양과학조사) ① 법 제20조 의2제1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 우 별표 4의 내용을 포함한 ‘외 국해역 조사계획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외국해역 조사계 획서가 적정한지 검토한 후, 지 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공 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 사를 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 는 ‘공해 등 조사계획서’는 별표 5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20조의2제1항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 터 해양과학조사 동의 여부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 ~ 제17조 (생략)

제18조(이행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3조의 이행을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생략)

제18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의 이행을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 락 처	(044) 200 - 5357